

개발행위허가 제한(연장,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 구 신정동 965-30번지 일대 신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(예정)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(연장,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가.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

구 분	위 치	기 제한 면적(㎡)	금회 제한 면적(㎡)			비고
			합계	확대	제척	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	신정동 965-30번지 일대	134,959.22	123,656.1	9,576.9	20,880.02	

나. 제한 근거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

다. 제한 사유

-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예정)구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함

라. 제한 기간

- 기존 제한지역 : 기정 고시일(2023. 7. 6.) ~ 금회 고시일로부터 2년
- 신규 제한지역 : 고시일로부터 2년

마.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

-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-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
-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용도변경
-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의한 집합건축물로 전환

- 토지의 분할
- 기타 토지등소유자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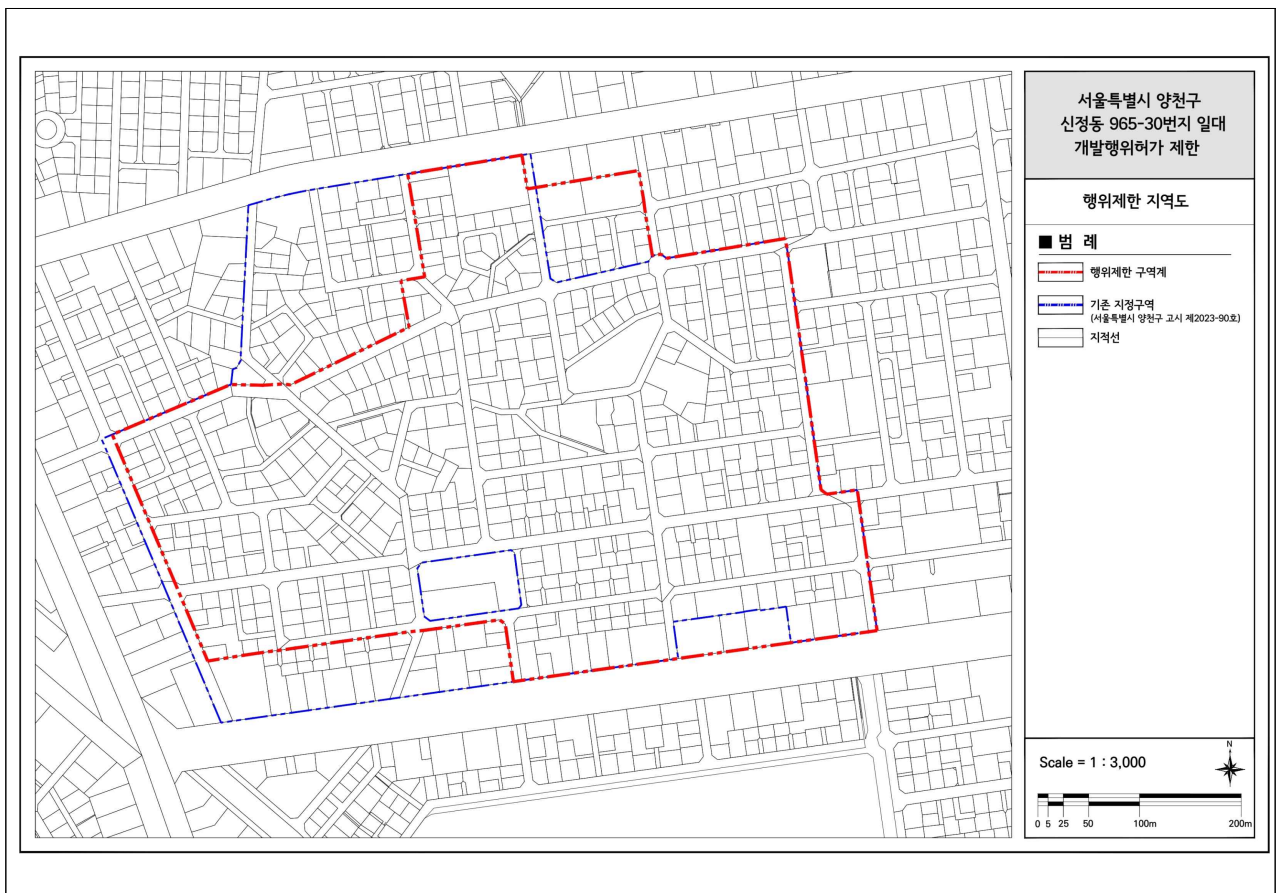
바. 제한 적용 예외

-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 신고 등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사. 관련도면 : 지형도면 참고

아. 기타사항 :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620-3512)로 문의
하시기 바람

□ 지형도면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